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창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122 판결 모욕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7노1122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동훈(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U(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4. 12. 선고 2016고정124 판결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들을 지칭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4. 11:30경 경남 C에 있는 D문화원 3층 사단법인 E지회 사무실에서, E지회 선거관 리위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 I을 지칭하여 "하여간 J의 문화예술계에 K씨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들이 하나 같이 애먹이네! G, H, I 중 문제를 안 일으킨 사람이 어디 있노? 전부 K씨야. 이상하게 하나같이 잡음이 나. 나무가 자라는데 뿌리 3~4개가 썩어가면서 나뭇가지가 마르고 썩기 시작했다. 썩은 가지들을 내손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썩은 뿌리와 썩은 가지에 비유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지만, 한편 같은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단법인 E지회의 지회장 및 회원의 관 계이고, 피해자들은 차기 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임원으로 입후보를 원하고 있던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 2 지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이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는 사 람임에도 입후보를 하였고, 피해자 G 역시 사실상 피해자 G을 위하여 입후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서 그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진술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발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피고인이 이 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횟수),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으로서 'K씨들이 애를 먹인다'라거나 '하나같이 잡음이 난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느낌이나 의견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4 피고인이 이후 '썩은 뿌리' 혹은 '썩은 가지'를 예로 들며 비유적인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 들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지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모두 지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발언한 장 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욕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할수 있 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 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어떤 글이나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